검 토 보 고 서

의 안 제81호

2021. 06. 08.

건 명	논산시 체육센터 관	<u></u> 라리 및 운영 조i	례 일부개정조례안
제안 및 제출자	논 산 시 장	제안연월일	2021. 06. 08.
소관위원회	산업건설위원회	회부연월일	2021. 06. 08.

보 고 내 용

□ 제안이유

○ 『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』에 따른 감면법령 및 『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』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민들의 이용편익증진 및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사항임.

□ 주요내용

- 체육센터시설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(안 제4조 제3항 제5호)
 -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.
- 체육센터시설 이용료 할인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 제2항 제3항)
- 체육센터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(안 제14조)
 - 사용자 취소 기준일에 따른 조문 정비.

□ 검토의견

○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시행령 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시행령 제86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.